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정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46호)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9. 11.
3. 회부연월일 : 2026. 9.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sup>1)</sup>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는 군인·검사·경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u>군인·검사</u>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①-----<br>-----<br>-----<br>--. <u>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u> -----<br>-----<br>--.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즉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sup>2)</sup>를 공권력 행사 주체의 방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법적 수단임<sup>3)</sup>.

군인·검사·경찰관은 그 직무와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강제력 행사 또는 형사사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직역으로서, 이들이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인(私人)의 방해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이 있음. 이들은 직무상 권한·지위·장비를 활용하여 집회·시위를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됨<sup>4)</sup>.

특히 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 등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검사는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며<sup>5)</sup>, 군인은 국가 강제력의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집회·시위 방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군인·검사·경찰관 대상 가중처벌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하며, 해당 신분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임.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는 자도 범죄가 성립하나 일정한 신분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함(이주원,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26, 436면).

4) 노태약 외 29인, 『주석 형법 각칙 제1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4년), 199-200면

5)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제195조를 개정하여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었음.

한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기관의 조직체계가 개편될 예정임. 아울러, 같은 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제195조를 개정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한 바 있음<sup>6)</sup>.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sup>7)</sup>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sup>8)</sup>를 수행하며, 8급 이하

#### 6)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0. 2.]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6조 삭제 <2026. 8. 4.> [시행일: 2026. 10. 2.]

#### 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sup>9)</sup>하게 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및 관련 조직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이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5 |

---

[시행일: 2026. 10. 2.]

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